

제 269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 - 7834

1972. 8. 14.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시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721 호 서울특별시 조례와

규칙공포에 관한 조례 3

◎ 사 명 3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조례와 규칙공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1972년 8월 12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721 호

서울특별시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조례와 규칙 (이하 " 자치법규 " 이라 한다) 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전문)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.

제 3 조 (조례) 조례의 전문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년월일을 기입한다.

제 4 조 (규칙)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년월일을 기입한다. 다만, 규칙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번호)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.

② 전항의 번호는 조례,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.

제 6 조 (공포방법) 자치법규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, 시보

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뉴스로 방송하여 공포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공포일) 자치법규의 공포는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날, 게시한날 또는 방송한날이 된다.

제 8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당시조례, 규칙의 번호는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.

사 령

① 1972. 8. 9.

시 설 과 지방행정주사 이 동 근
관리제 2 과 파견근무를 명함
중 로 구 지방행정주사 한 동 완
역청사업소 파견근무를 명함

② 1972. 8. 11.

남 산 공월 감 시 원 손 성 훈
관리사무소 성북구 근무를 명함

녹 지 과 지방농림기사 남궁 석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

포 장 과 지방토목기사 김 호 석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

건축과 지방건축지원 이태봉
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

기획정리 2과 지방토목지원 조진주
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

서울특별시